문서번호	환경과-2878
결재일자	2016.2.3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보도여부	

주무관	환경행정팀장	환경과장	도시관리국장
김대진	윤미	김병하	02/03 이동일

협 조		

2016년 1기분

환경개선부담금 부과 · 징수 계획

2016.2.3.

도시관리국

환 경 과

2016년 1기분

환경개선부담금 부과 · 징수 계획

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획을 수립함

Ⅰ 개 요

근거법규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

부과대상

-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
- 약16,000건(2015년 2기분 부과차량) 외 신규등록, 전입차량

※ 감면대상 : 저공해자동차,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(2016.1.1부터 범위확대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·자활급여),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·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

산정기준

-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, 지역별로 차등 산정
- 기준부과금액(20,250원)×산정지수(1.996)×오염유발계수(배기량)×차령계수(노후정도)×지역계수(1.53)

※ 2016년도 산정지수 1.968(2015.12.21. 환경부고시 제2015-241호): 2016년 2기분부터 적용

부과기간 및 납기

구분	부과기준일	부과기간	납 기
1기분	매년 12월 31일	전년도 7월 1일 ~ 12월 31일	당해연도 3월 16일 ~ 3월 31일
2기분	매년 6월 30일	당해연도 1월 1일 ~ 6월 30일	당해연도 9월 16일 ~ 9월 30일

Ⅱ 부과징수현황

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

(단위: 건, 원)

구 분	부 과		징 수		체 납		징수율 (%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총 계	19,590	2,036,567,280	15,941	1,716,242,820	3,649	320,324,460	84.27
자동차	16,546	1,422,487,100	13,054	1,115,170,750	3,492	307,316,350	78.40
시설물	3,044	614,080,180	2,887	601,072,070	157	13,008,110	97.88

※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 폐지[2015.1.20.개정, 2015.7.1.시행]

※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: 징수액의 10%[서울시 1%, 자치구 9%]

Ⅲ 세부추진일정

월	업무내용	관련기관
1~2월	○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 작성 ○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처리 - **자동차정보 기초자료 구축** - 부과대상자료 일괄생성 ○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등록 - **보정작업**(면제대상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면제차량인 저공해차량 등 확인 및 미고지) ○ **관외정보 요청**(최종주소지 반영) ○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홍보(강북구소식지 게재)	정보화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
3월	○ **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** - 고지서 제작 및 인쇄(우리은행OCR센타) - 고지서 우편발송(서울삼각산동우체국) ○ 연납신청자 접수 및 처리(납기마감일 7일 이내)	우리은행OCR센타 서울삼각산동우체국
4월	○ **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리** - 납기내 미수납자 가산금 부과(부과금의 3%) ○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	정보화지원과
5월	○ **독촉분 관외정보 요청**(최종주소지 반영) ○ **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(5년) 인쇄 및 일괄발송** ○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안내 홍보(강북구소식지 게재)	자치행정과 정보화지원과 우리은행OCR센타 서울삼각산동우체국
6월	○ **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** ○ 결손처분	부동산정보과

Ⅳ 소요예산

총소요예산 : 20,606천원

- 우편요금: 17,443천원
- 고지서 제작 및 관련비용: 2,663천원
- 부담금 부과 관련 소요경비: 500천원
- 예산과목

【정책사업】 환경보전 【단위사업】 환경관리

【세부사업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【편성목】 일반운영비, 업무추진비

Ⅴ 행정사항

자동차 부과 기초자료 구축작업 요청 : 정보화지원과

부과 및 납부관련 홍보 협조의뢰 : 홍보담당관

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

○ 부과대상 :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
○ 부과근거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○ 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: 연2회

기 분	부과기준일	납부기한	비 고
1기분	매년 7.1.~12.31.	다음연도 3.16.~ 3.31.	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기준일까지 사용분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됨
2기분	매년 1.1.~ 6.30.	당해연도 9.16.~ 9.30.	

※ 소유권 이전시에는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이후 1~2회 더 부과됨

○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: 자동차 배기량 및 차량연식,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부과
○ 문의사항 : 강북구청 환경과 ☎02-901-6742, 6744

부담금 면제 관련 대상자료 추출 및 업로드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

※ 부담금 면제 대상(시행령 제7조제1항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(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(보철용 자동차 1대)
-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자(보철용 자동차 1대)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(보철용 자동차 1대)

관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료요청 : 자치행정과

- 주소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민원 최소화(가산금 면제 처리). 끝.